

청주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가단3001(본소), 2024가단73731(반소) 판결

[보증채무금 · 임대료청구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김재원, 김환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이환규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피 고 D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현

담당변호사 김청수, 김윤기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2023.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 연대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189,112,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가설재 제조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에게 건설가설재를 임대해 왔는데, 2021. 11.경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한 결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지급보증각서에 한글 금액과는 달리 그 옆의 괄호 안에 아라비아숫자로 ‘2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도 정산금액이 2억 9,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다)을 매월 15일까지 1,000만 원씩 분할 결제한다. 매월 15일까지 결제하지 못할 시에는 모든 결제금액을 대표이사 D가 대신 결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정산금 중 2022. 2. 16.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서 “매월 15일까지 결제하지 못할 시에는 모든 결제금액을 대표이사 D가 대신 결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언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 및 피고 D가 이 사건 정산금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2022. 3. 17. 전에 이미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와 피고 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잔액 2억 7,500만 원(= 2억 9,0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2021. 11.경이 아니라 그 전인 2021. 6. 17.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만 정산한 것으로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각서에 수기로 “최종 결제금액은 확인하기로 함”이라고 추가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중 2021. 7. 19. 800만 원, 2021. 9. 18.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2018. 5.부터 2024. 7.까지 파주 E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시스템비계 등의 건설가설재를 임대하여 합계 475,760,658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액 2억 7,500만 원에서 위 추가

변제액 1,3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료채권의 원리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89,112,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추가 변제액 1,300만 원 공제 주장 부분

이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이 2021. 11.이 아닌 2021. 6. 17.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한 변제로 2021. 7. 19. 800만 원, 2021. 9. 18.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 이 사건 각서에서의 약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 1호증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가설채 임대료채권과의 상계 주장 및 반소청구 부분

을 3, 4, 5호증과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을 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부터 2024. 7.까지 발생한 건설가설채 임대료채권 475,760,658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임대료채권은 2018. 5.부터 2024. 7.까지 6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합계 475,760,658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5.부터 2018. 9.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5장 이외에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확인서, 정산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한 자료나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2021. 6.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채권은 239,548,244원이나 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최종 결제금액은 확인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만을 정산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 문구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임대료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발주서, 납품표(송장) 등에도 2018.

9.(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한 무렵이다) 이후의 것에는 발주자와 납품받는 자가 모두 원고가 아닌 시공사 'G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